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 정 : 2010. 10. 1.
개 정 : 2011. 3. 26.
개 정 : 2012. 2. 25.
개 정 : 2013. 3. 27.
전면개정 : 2014. 4. 18.
개 정 : 2015. 4. 30.
개 정 : 2016. 2.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및 목적) ①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이하 "장애인력비협회"라 한다) 정관 제3장에 근거하고 가맹단체가맹.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 및 체육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맹단체는 장애인력비에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을 통합 할 수 있는 용어로서 ○○시·도장애인력비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한다.

제2조(소재지)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3 조 (목적 및 사업)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력비를 지역으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을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관장한다.

1. 장애인력비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장애인력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장애인력비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력비 전국규모 연맹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장애인력비 대회의 유치 및 개최
6. 장애인력비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7. 장애인력비 경기자 및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장애인력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0. 장애인력비에 관한 선전.계몽

제 4 조 (사업의 위임) ① 가맹단체는 희망에 따라 가능한 경기대회 개최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유치승인을 필요로 하며 본 협회의 결재가 필요하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장애인력비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각 가맹단체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력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관리단체지정)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 장애인력비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력비협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궨위 또는 사고
 4. 당해 종목을 소관하는 시·도장애인체육회 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7. 경기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8. 경기력향상을 위해 장애인력비협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력비협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 시 관리단체로 지정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시·군·구 지부 및 시·도규모 연맹체

제 8 조 (지부)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부(이하 "시·군·구 가맹단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군·구 가맹단체 는 가맹단체 지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9 조 (시·도규모 연맹체)** ①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맹단체는 시·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 후 장애인력비협회에 제출하여야 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③ 가맹단체는 시·도규모연맹체에게 시·도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원) 가맹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장애인력비협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력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게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와 시·도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6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가맹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시·도가맹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⑦ 가맹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⑧ 임원의 취임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⑨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및 그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5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가맹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신설 2016. 2. 24.>

제1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가맹 종목의 경기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

속 가맹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거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의 경기단체 회장 후보에 입후보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 가맹단체장은 시도장애인력비협회에 산하 시도지부 회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6. 2. 24.>

④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⑤ 선임 임원은 해당 경기단체 및 다른 경기단체의 선수를 겸할수 없다. <신설15. 4. 30.>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가맹단체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가맹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경기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가맹단체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맹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가맹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8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 제⑧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3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가맹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9조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장애인력비협회는 본 협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선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본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제20조(대의원) ① 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역임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4.>

1. 시·군·구 가맹단체의 장
2. 시·도규모 연맹체의 장
3. 가맹단체 선수위원회 대표
4. 가맹단체 심판위원회 대표
5. 가맹단체 지도자 협의회 대표
6. 가맹단체 등급분류위원회 대표

②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장 및 시·도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부회장이 대리출석 할 수 있으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전에 가맹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맹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맹단체 시·군·구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가맹단체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력비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후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5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4.>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실무부회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 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30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1조 (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가맹단체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장애인력비협회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개정 2016. 2. 24.>
2. 심판위원회
3. 등급분류위원회
4. 법제상별위원회
5. 선수위원회
6. 임원심의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24.>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비장애인 포함)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시·군·구 가맹단체

제32조 (지위 및 명칭) ① 시·군·구 가맹단체는 가맹단체의 시·군·구 지부이며, 각 시·군·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 ② 시·군·구가맹단체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둔다.
- ③ 시·군·구가맹단체는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 (임원 승인) ① 시·군·구가맹단체의 임원은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군·구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규정 승인) ① 시·군·구장애인력비협회는 시·도가맹단체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군·구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 가맹단체는 제①항의 당해 시·군·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가맹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당해 경기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중앙경기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5조 (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군·구가맹단체는 시·도장애인력비협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보고 하여야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가맹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가맹단체는 시·군·구 가맹단체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구 가맹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 ④ 가맹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 가맹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⑤ 가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 또는 시·도 장애인력비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시·도 장애인력비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4.>

제36조 (시·군·구가맹단체 총회) ① 시·군·구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 시·군·구 가맹단체가 지부로 승인한 동·리·면 가맹단체의 장
 - 2. 시·군·구장애인력비협회 시도 선수위원회 대표(대리인 참석 불가)
- ② 시·군·구가맹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37조 (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군.구 가맹단체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군.구 가맹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 중 가맹단체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 38 조 (자산) 가맹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단체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지원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수익금

제 39 조 (자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가맹단체의 자산 중 제 1항 각호이외의 자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40 조 (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 장애인력비협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 41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체육회 및 장애인력비협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24.>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상에는 총사업비 자원 (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 예산 등) 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기금을 제외한 자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가맹단체 운영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4.>

제42조 (회계년도) 가맹단체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 43 조 (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가맹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가맹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사무국 규정)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2. 국가대표 선발규정
3. 위임전결규정

제 11 장 보 칙

제45조 (규약변경) 가맹단체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애인력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규정 제·개정) ① 가맹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군·구가맹단체의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가맹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 정으로 정한다.

③ 가맹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4.>

제47조 (규약의 해석) 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장애인력비협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력비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력비협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력비협회 정관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력비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 (해산) ① 가맹단체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가맹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시도장애인체육회(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당해 가맹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49조 (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가맹단체는 당해 단체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제34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해단체 정관(또는 규정)에 명문화 해야 한다.

부 칙 (1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0.10.1.>

부 칙 (11.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1. 3. 26.>

부 칙 (1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2. 2. 25.>

부 칙 (13.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3. 3. 27.>

부 칙 (14.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4. 4. 18.>

부 칙 (15.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5. 4. 30.>

부 칙 (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16. 2. 24.>

제2조(경과조치)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검직자는 현행 임기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16. 2. 24.>